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402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4023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가단225889 판결

전 문

원고(탈퇴),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J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주현, 박지수

변론 종결 2022. 4. 19.

판결 선고 2022. 6. 10.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가단22588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 다음행에 "마. C는 2015. 1. 6.경부터 2015. 9. 23.경까지 4억 8,550만 원의 개인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다.", 그 다음행에 "바. 2021. 5. 3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의 소외 회사 및 C에 대한 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고, 그 양도사실이 소외 회사에 통지되었다."를 추가하고, 3쪽 18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6, 18, 19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2~3쪽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원고가"를 "원고승계참가인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3~5쪽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양수금 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C가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이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 및 C에 대한 위 채권을 전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인수 무효 관련

1) 피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과 F 주식회사 사이 내지 F 주식회사와 G 유한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인수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2) 판단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이러한 동의 내지 승낙은 사후적,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툼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과 F 주식회사 사이 내지 F 주식회사와 G 유한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산양수도계약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사실, 위 자산양수도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1. 3. 13.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8.자 2021차전4373 지급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자산양수도계약을 소외 회사를 잔류당사자로 하는 계약인수로 보더라도1), 소외 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자산양수도계약을 사후적,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 대항요건 불비 관련

1) 피고의 주장

F 주식회사로부터 G 유한회사, G 유한회사로부터 H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서 원고(탈퇴), 원고(탈퇴)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항요건을 불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채권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의 채권 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채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면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중소기업은행,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 사이에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있었다고 본다면 잔류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필요로 할 뿐 따로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은행,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 사이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15,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 및 F 주식회사로부터 G 유한회사, G 유한회사로부터 H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부터 원고(탈퇴), 원고(탈퇴)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각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C를 상대로 채권양도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위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차전 4373) 신청을 하면서, 채권양도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이의신청하지 아니하였고 C에게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에 대한 부분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위 소송에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소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가합34155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채권양도는 소외 회사 및 C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액수 관련

1) 피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대출금 채권의 발생일이 2012.~2013.경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채권액이 변제되었는바,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대로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2) 판단

갑 제3,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최초 대출계약 및 이에 대한 C의 연대보증은 2012.~2013.경 이루어졌으나, 2015. 3. 30., 2015. 6. 11., 2015. 9. 6. 각 추가약정을 통해 대출금 변제일을 2015. 9. 30., 2016. 6. 10., 2016. 9. 6.로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C의 연대보증도 다시 이루어진 사실,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채권양수인이었던 G 유한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K) 절차에서 2017. 2. 28. 원리금 5,322,108,069원(원금 4,629,116,684원, 이자 692,991,385원) 중 3,173,994,991원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이자 및 일부 원금에 충당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차전4373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소외 회사와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7. 2. 28.경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소외 회사와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5. 현재 원금이 2,309,300,601원(원금 2,185,929,790원, 가지급금 123,514,611원)으로 계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2017. 2. 28. G 유한회사가 배당받은 금원에서 원리금을 공제할 경우 남는 원금 2,148,116,078원과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2,148,116,078원의 원금이 남아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사해행위 취소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면 가능하므로, 채권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C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억 1,200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계약금은 소외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중도금 1억 1,200만 원도 일부는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C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C가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C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그로 얻는 수입으로 C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소외 회사와 C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53억 여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C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사해성이 인정된다.

(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2584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채무자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재건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1인 회사 포함)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해행위로서의 사해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관적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원이 C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가, 2015. 9. 23. C의 위 계좌에서 소외 회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계약금)이 입금되어 같은 날 이 중 11,703,900원이 건강보험연금으로, 9,000만 원은 소외 회사의 마이너스 대출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사실, 이체된 9,000만 원 중 2015. 9. 23. 10,309,070원, 14,047,527원, 30,700,000원, 20,273,000원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같은 달 25. 24,732,755원이 '급여' 명목으로 각 계좌이체된 사실, 소외 회사의 공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폐쇄되어 있었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에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건강보험연금, 급여 등 자신의 채무가 아닌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2). 또한, 을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2015. 1. 6. 5,000만 원, 같은 해 4. 3. 930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0. 20.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도금(1억 1,200만 원) 중 5,000만 원이 입금되어 당일 및 그 다음날 3,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대출연체정리로 4,592,168원, M결제대금으로 4,591,443원이 지급된 사실, 또 다른 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5. 10. 20.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도금 중 나머지 6,2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2015. 10. 21. N에게 1,300만원, 그 다음날 L에게 2,4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같은 달 30. 5,247,697원이 M결제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L은 C의 채권자로 보이나, 한편 N이 C의 채권자인지 여부, 현금으로 인출된 5,900만 원(3,900만 원 + 2,0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9. 30.경 및 2015. 10. 2.경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피고의 배우자(C의 제수)인 O(2015. 3. 31. 소외 회사의 감사 직위에서 퇴임)에게 2015. 2.~7. 급여로 28,283,055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C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재건하기 위함이었다면, 급여 지급 유보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O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C는 2015. 9. 23.까지는 개인자금을 소외 회사에 투여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투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재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N이 C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지,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도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5,900만 원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는지, C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혹은 자신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의 사업 계속 내지 재건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C에 대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C와 형제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의 임원이었던 피고도 C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사해성 내지 사해의사가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내용

(1)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318,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6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며,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또한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42,000,000원(= 460,000,000원 - 318,000,000원)이 된다.

(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에 대하여 적어도 2,148,116,078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42,000,000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그 중 적은 금액인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한편, 피고는 C가 소외 회사 내지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금액 부분(특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 부분)은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C의 채무 내지 C가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고, ② 가액배상은 원상회복의 변형으로,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특유한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을 이유로 그 부분의 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원상회복 대상인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임이 인정될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이 아니라면 이를 원상회복 대상인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취득하여 그 목적물의 부담(근저당권 등)을 제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얻은 금원을 채권의 변제에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변제 금원을 가액배상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142,000,00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인성

판사박성규

판사신한미

별지

- 1) F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채권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G 유한회사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외 회사는 계약인수의 당사자 내지 잔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인수에 대하여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 2) 변론종결 이후 피고는, 2015. 9. 23. 10,309,070원, 14,047,527원, 30,700,000원은 C가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C의 채무 내지 C가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